「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지급형」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연금지급형 (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한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한다.

제4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5년 이상 50년 이하 연단위로 한다.

제5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원금과 이자의 지급방식

이 예금은 가입금액을 고객이 선택한 주기(1, 3, 6, 12개월)마다 동일한 원금과 이자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7조 이자지급

- ① 원금과 이자는 '예금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자율로 셈하여 고객이 선택한 연금지급주기 (1, 3, 6, 12개월)에 동일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도록 산정하여 지급하며, 이후 '매1년에 해당하는 날'마다 영업점에 게시한 이자율로 원금과 이자를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단, 매1년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 매1년에 해당하는 날에 이욘 첫 영업일을 이자결정일로 하고, 매1년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그월의 말일을 이자결정일로 한다.
- ② 만기일 전에 고객이 지급청구 할 경우 예금 신규일 또는 매1년에 해당하는 날에 '고객에게 적용된 이자 9 1%'를 적용한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매1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신규일 또는 매1년에 해당하는 날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유이자율

120-11 111 2 10 112	
특별중도해지 사유	중도 해 지 이자율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신규일 또는 매1년에 해당하는 날 당시 고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	시된 이 예금의 이자율
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시선 이 예금의 이시율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 춘 경우
- 가입자의 사망
- ④ 만기일 후에 고객이 지급청구 할 경우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 ⑤ 이자의 계산은 고객이 선택한 연금지급주기 (1, 3, 6, 12개월) 단위로 한다.

제8조 분할애지

이 예금의 분할해지는 불가하다.

제9조 거래제한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부칙>

본 약관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매 1년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하여 원금과 이자가 재산정된 가입 자부터 적용한다